

대법원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약)는,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중사 사망사건과 관련된 통화녹음파일의 요구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도178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사건의 개관

▣ 피고인들과 관련자의 지위

- 피고인1은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정훈실장, 피고인2는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공보과 공보계획담당으로서 공군 내의 중한 사고 및 사건에 대한 공보조치, 오보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등 공보활동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과 공보활동을 위해 다른 부서나 기관 등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김○○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근무하는 사람임

▣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 피해자의 사망과 방송 뉴스의 보도

- 2021. 5. 22.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의 피해자인 공군 △△비행단 소속 중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2021. 5. 31. 위 사건과 관련하여 공군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였다는 취지의 방송 뉴스(‘이 사건 뉴스’)가 보도됨

▣ 피고인들 대응행위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뉴스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김○○이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사건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 위 녹음파일에는 피해자가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으로 인해 부대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음
-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받아 이를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들에게 제공함

나.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뉴스보도로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 사건 녹음파일을 이 사건 뉴스 방송사가 아닌 다른 언론에 제공하여 그 언론으로 하여금 '사망자가 신고를 망설였다', '사망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공군에 대한 비난여론을 반전시킬 목적으로 자신들의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김○○으로부터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출받아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모의함
- 피고인2는 녹음파일이 유출될 경우 피해를 받을 것을 우려하여 파일의 제공을 거절하는 김○○을 회유하고, 자신이 김○○의 소속 대대장인 김□□과 동기임을 내세워 김○○으로 하여금 압박감을 느끼게 하였음. 피고인들은 김○○의 소속 대대장과 ◎◎ 비행단장 이○○을 통해 김○○이 이 사건 녹음파일을 피고인2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여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전달받음
-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공보활동과 관련한 직권을 남용하여 김○○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함

2. 소송경과

▣ 제1심: 무죄

▣ 원심: 항소기각

● 원심 무죄 판단 이유의 요지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뉴스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인식하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김○○에게 이 사건 녹음파일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뉴스 내용에 오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군수사 기관 등에 통해 면밀하게 확인하지 않았고,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기사를 통해 반박 보도를 하는 형식으로 대응하고자 한 면은 다소 부적절할 수 있음. 그러나 오보를 바로 잡겠다라는 주된 인식하에 김○○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보활동을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불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절차나 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더라도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구체적으로 보아 직무 본래의 수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로 보기는 어려움

● 검사가 상고함

3.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 ▣ **검사 상고 기각**(원심 수긍)

다. 판단 내용

- ▣ 원심판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